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2.] [총리령 제1800호, 2022. 3.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영업자 관리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3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관리하도록 하여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나.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의무 완화(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축산물이나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 정보 게시방법(안 제44조의2 신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제품명, 제조국과 제조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라. 우수수입업소의 서류검사 생략 요건 완화(안 별표 9 제2호가목)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180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국 정부가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위반 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 요청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을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 제3조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2)·4)·5)"를 "제3호나목1)·2)·4)·5) 및 같은 II.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를 "문서로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미리 수입신고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식품등이 반입 장소에 반입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자인 경우에는 그 행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49조의2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22년 7월 1일
2. 제25조 및 별표 8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별표 4 I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 중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을 "채취·제조 또는 가공"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연 5회 이상"을 각각 "연평균 5회 이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각각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로 한다.

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

- 1)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 2)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 3)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별표 13 I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의3서식부터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사목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아목 중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Applied Facility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꼭 채워야 합니다.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the required documents. Applicants do not fill in the darker blanks of this form.

(앞쪽 Front page)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인증: 120일 For certification: 120 days 연장: 120일 For extension: 120 days
해외제조업소명 Name of Facility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자우편주소 E-mail address	
신청인 Applicant	소재지(공장) Address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HACCP팀장 Person responsible for HACCP		
신청 내용 Content	HACCP적용 식품명(유형) Food items(type) subject to HACCP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제5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3)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2)·(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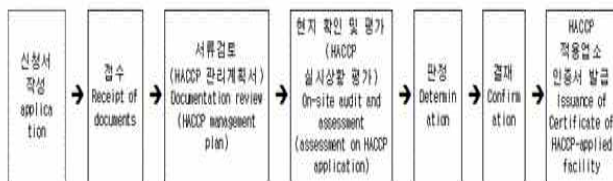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뒤쪽 Back page)

<p>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s</p>	<p>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A HACCP plan(a voluntary plan explaining critical limit, monitoring method, corrective measure and HACCP verification) for each type of food subject to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p> <p>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ion for HACCP-applied facility (submit only when extend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3))</p>	<p>수수료 Fee</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에 따라 인증심의장이 정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KOHAS) in accordance with attached Table 15 sub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ported Food Safety Control</p>
------------------------------------	--	---

처리절차 Procedure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 applied facility)

신청인
Applicant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Application for Change in Certification of
HACCP applied Facility**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refer to the Note in the back page. (알록 Front page)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120일 120days
신청인 Applicant	해외제조업소명 Name of facility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소재지 Address		대표자 Representative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연락처 Phone number

변경사항 Changes	변경 전 Before Change	변경 후 After Change
중요관리점 CCP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Steps or process to secure food safety by preventing or eliminating hazards)		
기타 Etc. (대표자명 등) (i.e name of representative)		

변경사유 Reason for Change

인증서 분실사유 Reason for the Loss of Certificat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changes in the certification of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2)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210mm x 297mm(백상지(80g/m²) 또는 동질지(80g/m²))

(뒤쪽 Back page)

		수수료 Fee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facility 2.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1부 A copy of statement of changes in CCP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에 따라 인증원의 장이 장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KAHAS) in accordance with attached Table 15 sub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유의사항 Note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인증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In case of a lost certificate, please fill in the Reason for Loss of Certificate and do not need to attach a copy of certificate.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인
Applicant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applied facility)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FACILITY

- 인증번호 Certificate No.:
- 대표자 Representative:
- 업소명 Name of Facility:
- 소재지 Address:
-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식품종별 Scope of Subject Items:
- 중요관리점 CCP:
- 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YY/MM/DD ~ YY/MM/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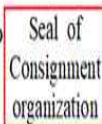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제4항·제5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s designated as the HACCP-applied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2)·(3)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2)·(4)·(5)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월 Month / 일 Day / 년 Yea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Front page)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ress

Tel: - , Fax: -

Certificate No.: MFDS 해당 부서 영문 약칭 .

HEALTH CERTIFICATE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 sanitary manner and are fit for human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해당 법률 영문명칭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s:

Signature:

(해당 부서 영문 명칭)
○○ Regional Office of Food &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mm x 297mm(백상지 150g/m²)

(뒤쪽 Back page)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Type and Number of packages	Weight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Front page]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ress

Tel: - , Fax: -

Certificate No.: MFDS 해당 부서 영문 약칭 -

CERTIFICATE OF FREE SALE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in domestic and (수출용의 경우, 해당 문구 삭제) overseas markets without any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해당 법률 영문명칭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s:

Signature:


(해당 부서 영문 명칭)
○○ Regional Office of Food &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mm x 297mm(백상지 150g/m²)

(뒤쪽 Back page)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Establishment No.

(앞쪽 Front page)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ress

Tel: - , Fax: -

Certificate No.: MFDS 해당 부서 영문 약칭 .

CERTIFICATE OF ANALYSIS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compliance with relevant requirements, as shown by the detailed tests performed by testing laboratories accredit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Name and address of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s:


Signature:

(해당 부서 영문 명칭)
○○ Regional Office of Food &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뒤쪽 Back page)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Type and Number of packages	Weight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Detailed Test Results				
Item	Results	Standard		

(앞쪽 Front page)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ress

Tel: - , Fax: -

Certification No.: MFDS 해당 부서 영문 약칭 -

CERTIFICATE OF MANUFACTURE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compliance with relevant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해당 법률 영문명칭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s:

Signature:


(해당 부서 영문 명칭)
○○ Regional Office of Food &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mm x 297mm(백상지 150g/m²)

(붙임 Back page)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Type and Number of packages	Weight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Manufacturing process		Ingredient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ress

Tel: - , Fax: -

Certification No.: MFDS 해당 부서 영문 약칭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is designated as the establish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2) of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 and Article 26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 Name of Manufacturer:
- Address:
- Name of Representative:
- Name of Registered Production Manager:
- Name of Registered Quality Control Manager:
- Notice: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for Functional Health Foods manufactured by Manufacturers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Approval Date:
- Remarks:

Signature:

(해당 부서 영문 명칭)
○○ Regional Office of Food &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mm x 297mm(복합지 150g/㎡)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ress

Tel: - , Fax: -

Certification No.: MFDS 해당 부서 영문 약칭 -

CERTIFICATE OF TRACEABILITY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corded and managed at each stage, from manufacturing to sales, in compliance with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of Manufacturer:
- Address:
- Name of Representative:
- Name of Registered Production Manager:
- Name of Registered Quality Control Manager:
- Notified Products:
- Approval Date:
- Remarks:

Signature:

(해당 부서 영문 명칭)
○○ Regional Office of Food &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ress

Tel: - , Fax: -

Certification No.: MFDS 해당 부서 영문 약칭 -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ingredient is a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which is approved in compliance with Articles 14 and 15 of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of Ingredient:
- Name of Representative:
- Name of Establishment:
- Address:
- Health Claims:
- Approval Date:
- Remarks:

Signature:

(해당 부서 영문 명칭)
(해당 국 영문 명칭)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mm × 297mm(복합지 150g/㎡)

